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0차 개정 2023. 07. 31. 규정 제2104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에서 위임된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

제2조(교육목표) 제2조의 2(용어의 정의)

제3조(교육과정의 구분) ①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일반선택과정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6, 2009.7.1, 2015.2.16)

②일반선택과정은 교양과정, 주전공의 전공과정을 제외한 과목을 말한다. 다만, 교양과정 및 전공과정 영역의 최소소요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과목은 일반선택과정에 포함한다. (개정 2009.7.1, 2015.2.16)

제4조(영역별 소요학점 및 이수학점)

제 2 장 교육과정

제1절 교양과정

제5조(교양과정 편성) ①교양과정은 창의적 지식융합능력을 갖춘 지성인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9.7.1, 2014.2.17)

②교양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편성한다. (개정 2009.7.1, 2014.2.17, 2015.2.16)

1. 공통기초교양 2. 핵심교양 3. 전문기초교양 4. 일반교양 5. 특별교양

제6조(교양과정 이수방법) ①모든 학생은 공통기초교양에서 8학점, 핵심교양에서 9학점 이상 및 학과에서 지정한 전문기초교양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나머지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은 핵심교양 또는 일반교양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09.7.1, 2014.2.17, 2015.2.16)

④교양과목 42학점 초과 이수학점은 졸업사정 시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학교육인증제에 따른 교육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2.22, 개정 2014.2.17., 2022.2.28.)

제2절 전공과정 제7조(전공과정 편성)

제 3 절 복수전공

제8조(복수전공 이수대상 제한) ①다음 각 호의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1. <삭제> (2017. 2. 28.)
2.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개정 2009.2.23.)
3. 법과대학 법학전공
4. 약학대학 각 학과
5. 의과대학 각 학과
6. 예술대학 회화과, 조소과 및 관현악과 (개정 2007.6.25, 2014.2.17)
7.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및 수의학과 (개정 2011.7.26.)
8. <삭제> (2017. 2. 28.)
9. 간호대학 간호학과 (신설 2009.9.14.)
10. 국가안보융합학부 각 전공 (신설 2014.2.17. 개정 2018.2.28.)

②제8조 각 호의 학과 학생은 다른 학위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단 국가안보융합학부 각 전공 학생은 제외한다 (신설 2007.12.6, 개정 2018.2.28)

제9조(복수전공 이수방법) ①복수전공 학생은 제4조에 따른 정한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이수준 학점 수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④복수전공의 이수를 취소한 경우에 복수전공 관련 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일반선택과정으로 구분하여 졸업취득학점에 포함하되, 학과장의 판정에 의하여 전공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5.2.16)

제10조(복수전공 신청 및 승인) ①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주전공 학과장을 거쳐 복수전공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수전공 학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제11조(복수전공 변경 및 취소) ①복수전공 이수를 승인 받은 학생이 당해 복수전공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복수전공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③복수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개정 2009.7.1.>

제 4 절 부전공

제12조(부전공 이수대상) 제13조(부전공 이수방법) ②부전공 이수자는 당해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15.2.16> 제14조 (부전공 이수신청 및 승인 등)

제 5 절 연계전공

제15조(연계전공의 설치) ①2개 이상의 학과를 연계하여 전공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 학과를 정하여야 하며, 주관 학과장은 별지 서식의 “연계전공 설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 2016.2.19.>

제16조(연계전공 주관 학과장) 제17조(연계전공 이수방법 등) ③연계전공은 당해 학생의 선택에 따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계전공의 이수방법은 제3절 및 제4절의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방법과 같다. <개정 2009.7.1., 조 변경 2016.2.19.>

제 6 절 자기설계전공

제18조(자기설계전공 이수방법 등) ①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자기설계전공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학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절 산학융복합과정

제19조(산학융복합전공의 설치) ①2개 이상의 학과가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전공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신청은 별지 서식2의 “산학융복합전공 설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2.19.>

제 7 절의2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제19조의2(마이크로디그리과정 설치) ① 1개 이상의 학과가 사회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신청은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설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2.25, 개정 2022.2.28. >

제 8 절 교직과정 **제20조(교직과정 이수 등)**

제 9 절 평생교육사(2급)과정 **제21조(평생교육사 과정 이수 등)**

제 10 절 과목 설강 및 이수시기 등

제22조(설강) ①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과목이라도 설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③설강된 교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교양과목과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전공과목 및 기초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2012.11.27, 개정 2021.2.25, 개정 2023.2.28.)

1. ★**학년별 재학인원이 20명 이하인 학과(부) 또는 전공으로서 전공과목 및 기초과목 수강인원이 학년별 재학인원의 1/2 이상인 경우**
2. 연계전공 및 평생교육사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23조(이수단위) ① **이론과목은 주당 1시간(1학기 15주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편성하고, 실험, 실습 및 실기 관련 교과목은 주당 2시간(1학기 15주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편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교육과정의 교과목 학점단위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 및 실기 교과목은 1학점 또는 2학점으로 편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수시기)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산학융복합전공, 교직과정은 제2학년 2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7.2.23, 2016.2.19)

제25조(과목이수 기본원칙) ①학생이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입학학년도에 편성된 당해 학과의 교육과정에 의한다. 다만, 교육과정 개정으로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학과장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게 하거나 이수를 면제한다. (개정 2009.7.1)

③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같이 이수하는 경우에는 주전공의 교과과정 적용 학년도와 달리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중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 교양과목은 교양과목 중에서, 기초과목은 기초과목 중에서, 전공(선택)과목은 전공(선택)과목 중에서 학생 본인이 교과목을 지정하여 재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9.7.1)

제26조(재이수) ①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C이하 성적의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하고, 평점평균을 재산출한다. (개정 2008. 2.13)

②제1항에 따른 ★**재이수과목의 성적은 A⁺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신설 2017.11.20.)

③★**재이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뒤에 취득한 성적을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F”로 평가받은 교과목에 대하여 임의로 이수한 학생이 성적정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방법에 준하여 처리하되 소정의 “낙제(F급)교과목 재이수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항 변경 2017.11.20.)

제 11 절 이수학점

제27조(이수기준학점) ①학생이 매학기 이수할 수 있는 기준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23, 2009.7.1, 2011.2.22, 2011.12.28, 2013.5.24, 2014.2.17, 2017.2.28, 2021.8.30, 2021.12.30, 2022.2.28, 2022. 8. 31.)

졸업(수료)소요학점	이수기준학점	성적우수자 초과이수 학점 ★(직전학기 3.75 이상인자)	비고
130학점 ~ 144학점	18학점 이내	21학점 이내	
145학점 ~ 160학점	21학점 이내	24학점 이내	
164학점 ~ 170학점	18학점 이내	21학점 이내	약학대학 및 의과대학 제외
164학점	26학점 이내	29학점 이내	의과대학
168학점	26학점 이내	29학점 이내	약학대학
232학점	23학점 이내	25학점 이내	
72학점	21학점 이내	24학점 이내	

제28조(이수학점의 취소)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점을 초과 이수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취득학점을 삭제**한다 (개정 2009.7.1)

제29조(재·편입학 학생) **제30조** (삭제 2009.7.1.)

제 3 장 수업 및 학적관리 등

제 1 절 수업관리

제31조(교수시간 등) **제32조(강의관리)**

제33조(수강편람 제공 및 수강신청)

④이미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한 수강신청변경기간 중에 변경하여야 한다.

제34조(수강취소) ①수강 신청한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일정에서 정한 당해 학기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소정의 “수강신청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와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2009.7.1)

②수강취소는 **학기별 2과목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09.2.23, 2009.7.1, 2009.9.14.)

제34조의2(강의평가)

제2절 시험 및 성적관리

제35조(시험) ①시험은 수시평가제로 하며, 담당교수는 시험의 기간을 정하고 시험의 시간표는 시험 개시일 일주일 전까지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3, 2009.7.1)

제36조(성적평가) ①**상대평가**의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7.1)

등 급	A등급	B등급이상(A등급+B등급)	C등급 이하
구성비	30%이하	70%이하	30%이상

②**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2.6, 2012.8.8)

1. (삭제 2011.9.14.)
2. 이론강의를 병행하지 않는 실험(실습·실기)과목과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과목**
3. 교직과목
4. 평생교육사 과목
5. 군사학과목
6. (삭제 2012.11.27)
7. LIN3.0사업단의 과목 (신설 2012.8.8., 개정2017.6.12., 2022.8.31.)
8.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의 과목 (신설 2022.2.28.)
9. DSC 공유대학의 과목 (신설 2022.2.28.)
10.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 (개정 2012.8.8, 2021.8.30.)

제37조(휴가자에 대한 성적평가) ①학생휴가규정에 의하여 휴가를 받은 학생이 ★**총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그 출석 시수와 휴가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당해 학기 수업시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여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4.8.28., 항으로 변경 2017.11.20. 개정 2018.2.28.)

제38조(부정행위자처리)

제39조(성적제출)

제40조(성적평점평균과 등급) ① (삭제 2009.9.14.) ② (삭제 2009.9.14)

③ 대학 및 대학원의 성적평점평균과 등급은 각 대학원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다만, 대학원의 평점평균이 1.50이하의 성적에 대한 등급은 D로 한다.(신설 2021.12.30)

등급	평점 평균	등급	평점 평균
A ⁺	4.01 ~ 4.50	C ⁻	1.51 ~ 2.00
A ⁰	3.51 ~ 4.00	D ⁺	1.01 ~ 1.50
B ⁺	3.01 ~ 3.50	D ⁰	0.51 ~ 1.00
B ⁰	2.51 ~ 3.00	F	0.00 ~ 0.50
C ⁺	2.01 ~ 2.50		

제41조(성적발표)

제3절 계절학기 및 특별학기 운영

제42조(수강대상)

제43조(과목설강, 수강신청 및 수강료) ①교과목 설강은 수강신청 인원이 전공과목의 경우 20명 이상, 전공과목 이외의 교양과목 등은 30명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7.1., 2012.11.27>

②수강대상 학생은 **매 학기별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수강신청 학생은 소정의기일 내에 총장이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감액 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강신청최소의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료를 반환하되, 폐강과목과 계절학기 개강 전 수강신청최소의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2.23, 2009.6.23)

1. 총 수업일수 3분의 1 경과전 :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액 (신설 2009. 2.23)
2. 총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전 : 수강료의 2분의 1 해당액(신설 2009. 2.23)
3. 총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 후 : 수강료 반환 없음 (신설 2009.2.23)

제44조(수업시간 및 평가관리) ①수업은 **3주 이상으로 편성하되, 학점당 15시간**(실험, 실습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7.5.22)

②담당교수는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평가를 하여야 하며, 성적평가 방법은 제36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정기학기에서 취득한 성적과 달리 관리한다.

제4절 학적관리

제45조(학적부 등 관리) **제46조(재입학 및 편입학 인원산정)** **제47조(재입학 지원 및 승인)** **제48조(편입학 지원)**

제49조 (삭제 2009.2.23.) **제50조(입학허가예정자의 서류제출)** **제51조(전과 절차)**

제52조(휴학) ①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휴학원**”을 **학사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다음 각 호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1. 병역의무이행
2. 육아휴학
3. 질병치료(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개정 2009.7.1., 2020. 5. 14, 2021.2.25.)

③특별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소정의 “**휴학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위하여 입영한 자는 입영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 읍, 면장의 입대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장의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⑤학칙 제35조제3항의 교환학생은 그 선발에 관한 증빙서류와 입학허가서를 제출하여 충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⑥ (삭제 2009.7.1.)
 ⑦학칙 제35조에 의한 창업휴학 학생에 대한 휴학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11.30.)

제53조(복학) ①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복학원”을 학사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2.25.)

②★휴학한 학생이 휴학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처리 한다. 다만,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을 하지 아니할 때에 제적처리한다. (개정 2009.7.1)

제54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퇴원”을 학사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21.2.25.)

제55조(증명서발급)

제 5 절 전공배정

제56조(전공배정 원칙 및 대상 학생) 제57조(전공배정 계획 공고) 제58조(전공배정 신청 및 절차) 제59조(전공배정 결과보고)

제 6 절 졸업

제60조(졸업논문) ①졸업논문은 졸업학기에 이수한 전공별로 시행하되, 당해 학기 이수 후 졸업이 가능한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61조(졸업인정 및 학위수여)

③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중에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표시한다.

제61조의2(공학교육심화과정) 제61조의3 (삭제 2012.11.27.) 제61조의4(LINC3.0사업단 교육프로그램) 제62조(명예졸업증서 수여)

제 4 장 정규 교육과정 외 학점인정

제 1 절 영어능력 인정

제목 개정(2014.2.17)

제63조(영어능력인정) ①학생이★재학 중 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본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의토익 포함)에 일정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때에는 제6조에서 정한 교양과정 대학영어 1,2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이수인정에 따른 부족한 교양학점은 다른 교양과목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7, 2013.1.15., 2014.2.17., 2017.2.28., 2022.2.28.)

⑤공인 영어능력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성적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이를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성적증명서는 성적표의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9.7.1, 2013.1.15)

⑥영어능력인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5)

제64조(성적우수자) TOEIC 기준 800점 이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권을 줄 수 있다.

1. 장학생 선발
2. 취업추천
3.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선발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 2 절 사회체험활동

제65조(사회체험활동의 구분) 사회체험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7.1)

1. 백마인턴십 : 총장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국내 기업체 등 기관에 파견하여 현장실무 및 연구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09.7.1)

2. 해외체험활동

가. 해외인턴십 : 총장이 인정하는 다른 국가의 기업체,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활동

나. 해외어학연수 : 총장이 인정하는 다른 국가의 교육기관이나 어학기관에서 당해 국가의 언어를 학습하는 활동 (개정 2009.7.1)

3. 학교기업 참여 (개정 2009.7.1.)

4. 창업(현장)실습 : 창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6.11.30.)

제66조(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등) ①사회체험활동 이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소정의 납입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수강신청을 무효로 한다. 다만, 백마인턴십 계절제의 경우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수입대체경비로 처리한다. (개정 2009.7.1)

②사회체험활동의 학점인정은 총 36학점 이내로 한다. 이 경우에 백마인턴십은 24학점을, 해외체험활동은 36학점을, 학교기업은 30학점을, 창업(현장)실습은 23학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7.1., 2016.11.30., 2019.7.30.)

제67조<삭제>(2017.5.22.) 제68조<삭제>(2017.5.22.) 제69조(이수면제) 제70조<삭제>(2017.5.22.) 제71조<삭제>(2017.5.22.)

제72조(해외체험활동 과목 및 학점) ①해외체험활동의 과목은 계절제와 학기제로 구분한다. (개정 2009.7.1)

②계절제의 과목명 및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고 1학점 당 당해 방학중에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해외인턴십 I-1	3학점	해외어학연수 I-1	3학점
해외인턴십 I-2	3학점	해외어학연수 I-2	3학점
해외인턴십 I-3	3학점	해외어학연수 I-3	3학점
해외인턴십 I-4	3학점	해외어학연수 I-4	3학점
해외인턴십 I-5	3학점	해외어학연수 I-5	3학점
해외인턴십 I-6	3학점	해외어학연수 I-6	3학점
해외인턴십 II-1	6학점		
해외인턴십 II-2	6학점		
해외인턴십 II-3	6학점		

③학기제의 과목명은 해외인턴십Ⅲ라 하고 18학점을 인정하며, 정기 학기 중에 5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 한다. (개정 2009.7.1)

④과목의 이수순서가 번호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3조(해외체험활동 신청자격 및 이수대상 학생 확정) ①해외체험활동 중 해외인턴십의 신청자격은 2학년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총장이 따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또는 당해 국가의 언어 능력을 소지한 자로 한다. (개정 2009.7.1)

제74조(해외체험활동의 준용) 제75조(학교기업 이수대상 학생 등)

제 3 절 의약바이오센터교육프로그램 (삭제 2012.11.27)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 (삭제 2012.11.27)

제 4 절 LINC3.0사업단 교육프로그램 **제75조의5(참여학사조직)** 제75조의6(수강신청 자격) 제75조의7(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제 5 장 학생교류와 학점인정

제1 절 다른 대학 수학

제76조(대상 및 인원) ①다른 대학(이 규정에서 다른 대학은 다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수학한 학점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바에 따라 당해 학생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대학에서 수학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②다른 대학에 수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학생으로서 직전 학기의 성적평균평점이 1.75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총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외국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23)

제77조(수학승인 및 기간)

③국내의 다른 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통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는 수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8조(과목이수 및 인정학점) ①국내의 다른 대학에서 이수할 과목은 본교의 과목과 일치하는 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과목과 일치하지 아니한 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②외국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이 지정하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장이 외국에서 취득한 과목 중에서 교양과목 또는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할 수 있다.

③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 및 학점 수는 그대로 인정한다.

제79조(다른 대학 수학 납입금) 제77조에 의하여 수학 승인을 받은 학생은 수학기간에 속하는 학기의 납입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학기인 경우와 협정서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80조(학위수여)**

제 2 절 본교 수학

제81조(대상 및 인원) 제82조(수학승인 및 기간) 제83조(취득학점) 제84조(본교 수학 납입금) 제85조(학위수여)

제 6 장 공개강좌

제86조(공개강좌)

제 7 장 학사운영위원회 (개정 2009.7.1)

제87조(구성 등) 제88조(기능) 제89조(회의)

제 8 장 보 칙

★**제90조(수업연한 초과 학생의 납입금)** ①수업연한(의무 등록기간)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 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5.31)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학부)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대학원)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②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90조의2(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납입금) ①「충남대학교 학칙」제7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 받은 학생의 등록금은 제9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 받은 학생 중 수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5., 2015.2.27., 2019. 3. 4.>

②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 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고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으로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한다. <신설 2013.1.15., 2019. 3. 4.>

③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망, 군입대 등으로 학과장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이 속한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 <신설 2013.1.15., 2019. 3. 4.>

④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신설 2013.1.15., 2019. 3. 4.>

제91조(의학과운영) 제92조(기타)

[별표1-1] (개정 2006.8.21, 2007.6.25, 2009.02.23, 2009.9.14, 2012.2.27, 2013.2.22, 2015.2.16, 2016.2.19, 2016.9.12, 2017.2.28, 2018. 2.28, 2018.6.25, 2019. 3. 4, 2020. 2. 14, 2020. 12. 29., 2021.8.30, 2022.02.28, 2022.08.31., 2023.02. 23., 2023. 7. 31.)

연계전공 설치현황(제15조제2항 관련)

연 계 전공명	연계학과(전공)	주관	연 계 전공명	연계학과(전공)	주관
목조건축 및 인테리어디자인	환경소재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소재공학과	국제학	영어영문학과, 고고학과, 사회학과, 언론정보학과, 정치외교학과, 지리행정학과, 경영학부, 무역학과, 법학부	정치외교학과
도덕윤리 ※교직운영	철학과, 교육학과	철학과	인문콘텐츠	국어국문학과, 고고학과, 철학과, 디자인창의학과	국어국문학과
통합과학 ※교직운영	화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지질환경과학과, 해양환경과학과, 응용생물학과	해양환경과학과	아시아비즈니스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무역학과
중국어통상	중어중문학과, 무역학과	중어중문학과	의약생명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동물바이오시스템학과, 약학과, 수의학과, 생물학과,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의과학과(대학원)	약학과
스마트이트레이드전공	무역학과, 컴퓨터공학과, 의류학과	무역학과	언어정보처리전공	언어학과, 컴퓨터공학과	언어학과
지식생태전공	문헌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문헌정보학과	<삭제>	<삭제>	<삭제>
감성인공지능소프트웨어전공	심리학과, 컴퓨터공학과	심리학과	환경ICT전공	환경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환경공학과
백제학 (신설 2017.31.)	국사학과, 고고학과, 사학과	고고학과	과채·특용 작물영농창업전공	원예학과, 식물자원학과, 응용식물학과, 생물환경화학, 농업경제학과	원예학과
미래기술 창업학전공	경영학부, 무역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언론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제학과	경영학부	중청학 (신설 2017.31.)	국사학과, 한문학과, 철학과	한문학과
항공우주안보학전공	국가안보융합학부, 항공우주공학과, 천문우주공학과	국가안보융합학부	통일리더십과 개발협력전공	국사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행정학부, 언론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과학기술 행정융복합 전공	기계공학교육과, 전자공학과, 전파정보통신공학과, 행정학부, 환경공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도시자치융합학과	DSC공유대학	바이오AI융합전공	생명정보융합학과, 컴퓨터융합학부, 생물학과,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생명정보융합학과
지식재산융합전공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건설공학교육과	DSC공유대학	반도체융합전공	물리학과, 기계공학부, 신소재공학과, 전자공학과, 전파정보통신공학과, 분석과학기술학교(전문대학원)	물리학과

[별표 3] <개정 2007.2.23. 2018.6.25. 2021.12.30>

백분율 점수(실점) 환산 기준표(제40조제5항 관련)

등급	평점평균	환산점수	등급	평점평균	환산점수
A ⁺	4.50	100.0	C ⁺	2.50	79.9
	4.49	99.8		2.41	79.0
	4.41	99.0		2.31	78.0
	4.31	98.0		2.21	77.0
	4.21	97.0		2.11	76.0
	4.11	96.0	C ⁰	2.01	75.0
A ⁰	4.01	95.0		2.00	74.9
	4.00	94.9		1.91	74.0
	3.91	94.0		1.81	73.0
	3.81	93.0		1.71	72.0
	3.71	92.0		1.61	71.0
B ⁺	3.61	91.0	D ⁺	1.51	70.0
	3.51	90.0		1.50	69.9
	3.50	89.9		1.41	69.0
	3.41	89.0		1.31	68.0
	3.31	88.0		1.21	67.0
	3.21	87.0	D ⁰	1.11	66.0
B ⁰	3.11	86.0		1.01	65.0
	3.01	85.0		1.00	64.9
	3.00	84.9		0.91	64.0
	2.91	84.0		0.81	63.0
	2.81	83.0		0.71	62.0
F	2.71	82.0		0.61	61.0
	2.61	81.0		0.51	60.0
	2.51	80.0		0.50 이하	0

※ 평점평균은 환산 점수 구간에서 비례계산법을 적용한다.

예: 평점평균 4.48 → 환산점수 99.7 평점평균 3.25 → 환산점수 87.4

[별표 4] <개정 2007.12.6, 2009.7.1, 2012.11.27, 2013.1.15., 2014.2.17., 2018.6.25., 2021.08.30, 2022.02.28. 2023. 2. 23>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제63조제2항 관련)

공인 영어시험	TOEIC	TOEFL (IBT)	NEW TEPS (신설 2018.6.25.)	TOEIC Speaking	OPIc	IELTS	G-TLP (LEVEL 2)	비고 (적용)
대학영어 1,2 이수 면제 기준	800 이상	91 이상	309 이상	130 이상	IM3 이상	7 이상	76 이상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